

국가별 방역관련 출입국 정책 현황

(’22.9.6 기준)



| 발간 |

항공산업정보실 : 02-2669-8731 | E-mail : airinfo@airtransport.or.kr

본 자료는

코로나19 관련 전 세계적으로 높은 백신접종률과 확진자 감소로 입국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있는 주요국가들의 출입국 정책 현황(22.9.6 기준)입니다.

제한해제 정도에 따라 1군(완전해제), 2군(부분해제), 3군(제한유지) 국가로 분류하였으며, 국가별 주한 대사관, 외교부(해외안전정보), 방대본(해외출입국관리팀) 및 EU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국가별 유동적인 상황 및 정책 변동으로 인해 본문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

목 차

① 1군 분류 국가(완전해제)	4
○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등 60개 국가	4
② 2군 분류 국가(부분해제)	5
○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	5
③ 3군 분류 국가(제한유지)	9
○ 중국	9

국가별 방역관련 출입국 정책 현황

<’22.9.6(화) 기준>

① 1군 분류 국가 (완전해제)

○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등 60개 국가

구분	조치해제 국가	비고
미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쿠바, 레나다, 과테말라, 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교부 홈페이지
중동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쿠웨이트, 이집트	
유럽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영국, 폴란드, 스웨덴, 덴마크, 라트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몬테네그로, 체코, 불가리아, 그리스, 키르기스스탄, 크로아티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독일, 이탈리아,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에스토니아, 조지아,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아시아-태평양	몽골, 호주,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가봉, 남아공, 베냉, 르완다, 수단,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2 2군 분류 국가 (부분해제)

○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

국가	내용		비고
대한민국	입국제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전 PCR,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불필요(9.3)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유지 	방역관리 대책본부 해외 출입국 관리팀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자가격리 의무 해제(6.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항공규제 전면 해제(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편수(슬롯) 제한 해제 : 시간당 20대 -> 40대 - 비행금지시간(20시 ~ 05시) 전면 해제 - 항공편 증편 : 420회/주 제한 해제 	
미국	입국제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접종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 입국허용 	외교부
	백신접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6.12)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 후 3~5일 안에 진단검사 받고 자가격리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최신접종 완료(up to date*) 상태일 경우 자가격리 불요 * 부스터 샷 접종완료, 2차 접종완료 후 부스터 샷 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일본	입국제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제한인원 20,000명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현재 50,000명으로 확대 검토중 • 무사증 입국제도 중지 및 기존 비자 무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입국자 사증 소지 필수 • 관광목적 이외의 '특별한 예외적 사유' 외국인 신규입국 허용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및 취업목적 단기입국자 - 장기체류를 위해 새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 -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외교 사증 소지자, 영사레터 소지자 	외교부, 주일본 대사관 등
	백신접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외국인 필수 제출 서류 (준비절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72시간 내 검사 후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 백신증명서 소지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9.7) 	

국가	내용		비고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입국자 방역 규정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색국가(한국 포함) : 입국 시 PCR 검사 및 격리 면제 · 3차 접종완료자 및 미완료자 모두 일본 도착 후 코로나 검사 및 격리 미 실시,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미 실시, 대중교통 이용 제한 없음 - 적색·황색 국가 : 입국 시 PCR 검사 및 격리 실시 · 백신접종 미소지자 3일간 격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당국의 단계적 규제 완화로 일부항공 운항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나고야 노선 11개월만에 재개 (4.1) - 도쿄(나리타)·오사카·후쿠오카 노선도 증편 운항 (3.27) - 인천발 나리타 노선 주6회 → 매일 - 오사카 노선은 주3회 → 주5회 - 후쿠오카 노선은 주1회 → 주2회 -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7.25) → 주28회 	주한 일본대사관
인도네시아	입국제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도착비자 제도 재개 ('2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귀국 또는 제3국행 비행기 티켓, 코로나 치료비용 커버할 수 있는 보험증 (액수 미정) 필요 - 18세 미만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 30일 간 체류 가능하고 1회 30일 연장 가능, 출국은 다른 공항을 통해서도 가능 - 입국시 유증상이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외교부
	백신접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외국인 필수 제출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일 기준 14일 이전 백신접종(2, 3차) 증명서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접종자 및 1차접종자 : 4박5일 / 4일차 PCR 검사 ● 2, 3차 백신접종자 : 출발일 기준 14일 이전 접종 시 무격리 	

국가	내용		비고
필리핀	입국제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접종 완료자(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 완료한 부모 동반 시 접종 증명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 사업 또는 관광 목적으로 최초 30일 미만 필리핀 체류자 무격리 입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고,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 제시 - 필리핀 체류기간 동안 코로나 치료를 위해 최소 미화 35,000불의 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보험증서 소지 	외교부
	백신접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외국인 필수 제출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영문)」 소지 -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소지 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안티젠 음성확인서(negative laboratory based Antigen Test) 소지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이 허가된 한국인은 격리 조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필리핀 부모와 동반한 12-17세 한국 청소년이 백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부모와 함께 14일 격리(5일째 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올때까지 시설격리, 잔여기간 자가격리) ※ 입국후 7일간 능동감시(self-monitoring)를 실시하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지방정부에 보고 	
베트남	입국제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제출 규정 폐지 (5.15) ●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국민에 대한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시행 ('22.3.15~'25.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러시아, 일본,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벨라루스 	외교부
	백신접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및 격리 지침 (하노이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소지(2세 이상)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국가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COVID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검역신고 -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지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북 24시간 이내 RT-PCR/RT-LAMP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 - 방역 관리 및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체류지 소재 지방의 의료기관(보건소)에 주동적으로 연락/신고 의무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태국	입국제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태국 사증면제협정 재개 (4.1) • 타일랜드 패스 폐지(7.1) 	외교부
	백신접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외국인 필수 제출 증명서 - 여권사본, 백신접종 완료증명서, 호텔예약증(1박), 코로나 치료비 보장 여행자보험증(2만불 이상) - PCR 음성확인서(출발 전 72시간 이내) 제출 불요 ('22.4.1~)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캐나다	입국제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접종 완료 외국인(비필수적 목적) 입국허용 ('21.9.7~) • 백신 미접종 외국인(비필수적 목적) 입국금지 	외교부
	백신접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접종 완료증명서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자 대상 무작위 선정 검사 - 검사 결과 수령까지 격리 불요 	
뉴질랜드	입국제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방문객 무격리 입국 허용(8.1) - 입국 전 뉴질랜드 여행자 신고(NZeTA)신청 필수 	외교부
	백신접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외국인 필수 제출 서류 -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및 출발 전PCR 검사(48시간 이내), 신속항원 검사(24시간 이내) 음성 증명서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양성 판정 시 7일 자가격리 	

3 3군 분류 국가 (제한유지)

○ 중국

국가	내용		비고
중국	입국제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중국 본토 입국 및 경유 불가 ('20.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유효비자,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 외국인 입국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또는 C비자(승무원 등),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외교부
	백신접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외국인 필수 제출 서류 (준비절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전 48시간 내 PCR 1회 - 음성인 경우, 블루코드 신청 - 탑승 전 12시간 내 PCR 검사 1회 - 블루코드,1,2,차 PCR 검사 음성 결과지로 항공사 제시 및 비행기 탑승 	
중국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입국자 방역 규정 (4.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국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전 48시간 내 PCR검사, 음성인 경우, 블루코드 신청 - 탑승 전 12시간 내 PCR 검사 - 블루코드와 탑승 전 음성결과를 보고하고 비행기 탑승 2) 입국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일 시설 격리 + 3일 자가건강모니터링 - 시설격리 1,2,3,5,7 일째 및 자가건강모니터링 3일째 PCR 검사 실시 • 한국인 방역조치 간소화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 7일전 PCR검사, 자가모니터링 불요 - 백신접종 이력 무관, 혈청항체 IgM 및 N단백질 IgM 항체검사 불요 	중국 대사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항공사 베이징 입국 직항노선 불허('20.3) • 중국 국제 여객선 서킷브레이커 정책 완화 발표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확진자 5~9명 발생시 2주간 <li style="padding-left: 40px;">10명이상 발생시 4주간 운항 정지 (변경) 탑승객 중 확진자 4~8%일때 1주 <li style="padding-left: 40px;">8%이상 2주간 운항 정지 	중국 민항국

국가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 코로나 정책 : 코로나19의 유입 차단 및 국경 간 인원 이동 극단적 제약, 상하이 봉쇄 및 항공물류 제한 -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국제선 운영 축소 -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 대폭 축소 - 중국 항공당국인 민용항공국은 '14차 5개년 민항 발전 계획('21~'25년)' 발표 및 국제선 회복을 '23년도로 예측 - 2022년도 상반기 중국 3대 항공사(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약 497억위안(약 9.9조원) 손실 기록 	